

## 영화분야(소위원회, 전문) 위원 위촉 공모

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분야(소위원회, 전문)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8년 8월

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

### 1. 모집분야: 분야별 상세한 업무내용은 [붙임1] 참고

모집분야	인 원	근 무 지	위촉기간
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	위촉일로부터 2019.4.29까지
영화 전문위원	○명		

**【위원회 청사】**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, 3층

### 2. 지원자격

-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
  -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 - 교육·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 - 언론·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 - 청소년·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
  -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,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
-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가능함

※ **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시 유의사항** ※

- 영화 전문위원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. 단, **단체별 추천인수는 1인 이내**
-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화 전문위원의 업무, 회의 개최횟수 및 소요시간 등을 참고하여,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격인사를 추천하여야 함
- 영화 전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**공문으로 추천**하여야 함. 추천 시 **[붙임4] 단체소개서** 서식에 단체 일반사항과 주요사업실적 등을 기재하여, 이를 지원자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

### 3. 결격사유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
  - 「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」 제6조(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    - 공무원(「교육공무원법」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)
    - 「정당법」에 의한 당원
   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
  -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  -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

### 4.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

가. 모집기간: **2018.08.21(화) 09:00 ~ 2018.08.31.(금) 17:00**

※ 17:00 이전 도착까지 접수 유효함

나. 접수방법: **E-mail([jobk mrb@k mrb.or.kr](mailto:jobk mrb@k mrb.or.kr)) 접수**

※ 접수 시 한글 파일로 제출

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## 5.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
지원 시 *붙임 양식으로 작성, 별지사용 가능	<b>1. 필수서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[붙임2] 위원 이력카드*</li> <li>▪ [붙임3] 자기소개서*</li> <li>▪ [붙임5]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*</li> <li>▪ 최종 학력증명서 1부</li> <li>▪ 경력증명서(위원 이력카드에 기재된 각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) 1부</li> </ul> <b>2. 해당자에 한함(기관·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[붙임4] 단체소개서*</li> <li>▪ 기관·단체장의 추천서 1부</li> </ul>
위촉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본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신원조회용) 각 1부</li> <li>▪ 주민등록증사본, 통장사본 각 1부</li> <li>▪ 반명함판 사진(300*400픽셀)</li> </ul>

- ※ 학력·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·변조할 경우 위원 위촉 취소 가능함  
 ※ 서류접수 마감 후 개별적으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요청이 있을 예정임

## 6. 위촉절차

- (위촉방법) 영화분야(소위원회, 전문) 위원은 **제출 서류에 대한 소정의 검증**을 거쳐 선정 및 위촉 예정
  - (위원예우) 위원 위촉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
  - (위촉공고) 위촉 대상자 명단은 **2018년 9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** 예정.  
위촉에서 제외된 지원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
  - (위 촉 후) 위촉 대상자에 한해 **위원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진행** 예정
-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는 요청 시 반환 가능합니다.